

[사 건 명] 행심 2018 - 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0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인천 ◎◎초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7. 12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12 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1.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치위원회에서 ■■■, ●●●에 대한 폭력행위를 다루고자 하였다면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 측의 의견진술과 관련 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방어권을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판단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유선통보를 하여 관련 사안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측은 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본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 측에 문자메시지 또는 참여안내 등기를 발송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점, 의견진술기회를 꾸준히 안내한 점, 자치위원회 및 조치결과 통보서에 불복절차에 대하여 안내한 점 등으로 볼때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욕’ 을 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놀리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라.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선도와 교육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반 전체를 보고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다음연도 학급편성의 어려움과 피해를 호소하는 두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여 피해학생으로 특정하여 결정한 것이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처분 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7. 5.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같은 반 친구 등에게 ‘거지’ ‘아 씨~’ ‘ ’ ■새끼 ‘ 등 계속 욕을 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 등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7. 11. 22. 학교폭력사안 접수 후에 담임선생님이 2017. 11. 23. 경 문자메시지와 2017. 11. 24. 전화를 통하여 청구인의 모친에게 4학년1반 전체에 대한 학교폭력사건으로 사안이 접수된 사실과 사건개요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7. 11. 27. 경 핸드폰 메시지로 자료를 보냈으며, 청구인은 2017. 11. 29. 경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학교폭력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청구인의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한 학교폭력임을 적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3)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 ●●●에 대한 폭력행위를 다루고자 하였다면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 측의 의견진술과 관련 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방어권을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7. 12.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의 조치원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 ●●●에 대한 폭력행위에 국한한 것이 아닌 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 점이고, 청구인 측에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진술을 한 만큼, 청구인의 의견진술과 관련 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해학생을 ■■■,

○○○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담임선생님 행동특성 누가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반 친구 등에게 계속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청구인은 담임선생님의 누가기록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임선생님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욕’은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양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처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청구인의 지속적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